

보상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정관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반경비”란 대학에서 그 대상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요된 경비를 말하며, 여기에는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지원된 연구비, 대응자금, 특허출원·등록비, 특허 유지관리비, 기자재·건물 등 감가상각비, 시설·기자재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다.
2. “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이란 대학에서 겸직 또는 파견에 따른 보직자, 직원, 계약직원, 행정조교, 산학협력단 임용 직원 및 계약직원 등을 말한다.
3. “기타 산학협력 수입”이란 발전기금 등의 기부금, 주식 또는 유가증권 등의 기증, 교원의 연구결과 활용으로 인한 수입 등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원칙) ①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산학협력단 재원의 수입에 직접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의 재원은 해당 수입원의 사업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제4조(보상금의 지급연도) 보상금은 보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 학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다음 학년도에 이월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외부연구비 수탁) ① 외부연구비 수탁에 대한 보상금은 총 연구비의 10퍼센트 이상 간접경비(over-head)를 징수한 과제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간접경비를 10퍼센트 징수한 경우 보상금은 징수된 간접경비의 2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으며, 10퍼센트를 기준으로 징수율이 1퍼센트 증가할 때마다 보상금은 0.5퍼센트를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술이전) 직무발명에 따른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금은 「지식재산 관리 규정」에 따르며, 본 대학 벤처연구비 지원에 따른 연구결과물의 활용으로 인한 기술이전도 이와 같다.

제7조(학교기업 운영) 학교기업 운영을 통하여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 재원의 수익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은 본 대학 「학칙」 제102조의2제3항 및 「학교기업운영 규정」 제19조에 따른다.

제8조(국책사업단 등) ① 국책사업단 및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소(“센터”를 포함한다)의 사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각각의 사업수행 후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산학협력단에서 자유롭게 가용할 수 있는 수입계좌로 사업비를 이관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본다.

② 대학에서 대응자금이 출연된 경우 그 금액은 수입금액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 보상금은 수입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총액으로 지급하고, 각각의 기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의 기준은 단위 사업단별 또는 연구소별로 정한다.

제9조(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 ① 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에 대한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제반경비를 제외한 10억원의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1. 장비운용 및 유치 수입
2. 연구비 및 사업관리 수입(간접경비 수입을 포함한다)
3. 학교기업 운영 수입. 다만, 산학협력단안에 학교기업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4.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실험·실습시설 등의 사용료
5. 기타 산학협력 성과에 따른 수입

② 산학협력단 연간 순수익이 10억원을 기준으로 순수익의 5퍼센트를 총액으로 하여 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에게 분배하여 지급하며, 1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0.5퍼센트를 증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그 분배의 기준은 산학협력단장이 정한다.

제10조(기타 산학협력 수입 기여자) 기타 산학협력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수입금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지급결정)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규칙의 제정) 산학협력단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세칙, 내규, 지침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09. 6. 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